

행정자치부, 지자체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 내년 시행

법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금지시키는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 이상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 수의계약 사유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수의계약 위주로 추진되던 재해복구사업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21일 시행된 수의계약대상과 시공사 선정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이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 낙장·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 같은 수의계약 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0만 5,000건에 17조 8,000억원(2003년 기준)에 이르는 지자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건수 68.7%, 7만 2,623건)과 금액(24%, 4조 2,000억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1,000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수의계약 사유와 계약금액, 계약이행 기간 등을 월별로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다.

안세경 재정경제팀장은 “현재 129개 지자체(51%)가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대상·시공사 선정기준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은 500만원)를 수의계약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인터넷에 공지하고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인터넷으로 견적서를 제출 받아 심사기준(기술능력, 가격, 시공여유율 등)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특별한 사유로 1억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할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안세경 팀장은 “하자 구분 곤란이나 2인 이상 시공 때 혼잡성 등 기존 수의계약 대상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특히 하자책임 불분명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하자도를 검증, 수치화해 수의계약 가

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행정자치부는 재해복구공사의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매년 발생하는 긴급재해복구공사는 긴급하다는 이유로 무더기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 적절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의 <개선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초에 미리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연간 단가계약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그 동안 맨홀 보수나 하수도 보수 등 제한적인 시설사업에 연간 단가제를 운영하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건설업체들은 연초 해당 지자체가 제시한 공종별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추후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며, 공사비는 사후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의계약방식보다 2개월 이상 시공이 앞당겨지고 우수업체 선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의 직계존·비속, 대리인 등과의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의 배우자, 그들의 직계존·비속, 이들의 자본금 합산액이 50% 이상 사업자, 본인의 계열회사 등도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금지시키는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그 동안 지자체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왔던 방식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의계약 비율이 현행보다 크게 낮아지고 계약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국가와 지자체 계약실적(2003년)

구 분		국가기관		지자체	
		건 수	금액(억원)	건 수	금액(억원)
계		62,208	138,122	105,703	177,575
공 사	소 계	33,966	90,565	61,781	150,944
	10억 미만	33,094 (97.4%)	16,405 (18.1%)	60,580 (98%)	71,395 (47.3%)
	10억 이상 ~ 50억 미만	656 (1.9%)	11,538 (12.8%)	963 (1.6%)	30,281 (20%)
	50억 이상 ~ 100억 미만	78 (0.23%)	4,831 (5.3%)	120 (0.2%)	9,164 (6%)
	100억 이상 ~ 1000억 미만	108 (0.32%)	24,946 (27.5%)	107 (0.18%)	25,184 (16.7%)
	1000억 이상	30 (0.15%)	32,845 (36.3%)	11 (0.02%)	14,920 (10%)
용 역		8,701 (31.9%)	19,919 (53.4%)	18,609 (68.1%)	17,391 (46.6%)
물 품		19,541 (43.5%)	27,638 (74.9%)	25,313 (56.5%)	9,240 (25.1%)